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1선거구

고병국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
생각합니다.

본 의원은 개정된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시행령(대통령령 제30151호, 2019. 10. 24. 시행)에 따라
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,

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
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방법을 정함
으로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
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
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